

재가기관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20년 01월 01일 기준)

[첨부 1]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 기본 수가 (월 한도액)

장기요양 1등급	장기요양 2등급	장기요양 3등급	장기요양 4등급	장기요양 5등급	인지지원등급
1,498,300	1,331,800	1,276,300	1,173,200	1,007,200	566,600
본인부담금 부담비율		기초생활수급자		0% 부담	
		의료, 감경 (40%, 60%)		9% 또는 6% 부담	
		일반수급자		15% 부담	

※ 원거리교통비,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가산, 프로그램 관리자 가산,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가산,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비용 및 목욕서비스 제공가산, 급여비용 가산,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는 월 한도액에 포함하지 않음

[첨부 2] 방문요양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 방문요양 1회 210분, 240분 폐지(단, 1등급, 2등급 유지)

구분	금액(원)							
방문요양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1·2등급만 이용 가능	
							210분 이상	240분 이상
	14,530	22,310	29,920	37,780	42,930	47,460	51,630	55,490
방문간호	30분 미만			30~60분 미만			60분 이상	
	36,110			45,290			54,490	
방문목욕	차량 이용 시						방문목욕(차량 미이용)	
	차량 내 목욕			가정 내 목욕				
	74,470			67,150			41,930	

[첨부 3] 방문목욕시 1회당 급여비용

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목욕차량을 이용(차량내 목욕제공)	목욕차량을 이용(가정내 목욕제공)
41,930	74,470	67,150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각각 9% 또는 6%를 본인이 부담하며, 국민기초생활 수급노인은 무료이다.

이래노인복지센터(인)